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명 :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건요지 : 별첨
4. 검토의견 : 별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7년 7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희배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 조례 안은 2007년 6월 29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대전발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의 중복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전발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의2).
- 나. 법령에 규정된 중복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대전발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계법령과 조례의 중복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대전발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한 것은 위원회의 자율성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